

HiT글로벌특화센터 운영규정

2025. 08. 01. 최초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글로벌사업단의 HiT글로벌특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센터의 사업기간은 약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 ①센터는 센터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의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센터는 사업 목적에 따라 바이오헬스, 재활 등 복수의 특화분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을 둘 수 있고, 구성원은 관련 교직원 및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화사업 전략 수립, 구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센터 연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구성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지역 거버넌스(지산학연관병) 구축에 관한 사항
5. 보건특화 주문식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공유·확산하는 거점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글로벌사업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HiT글로벌특화센터장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은 대학교원 또는 센터 운영사업 관련 산업체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HIT글로벌특화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8조(소집 및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결산 및 사업성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0조(재정)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기타지원금

제11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으로부터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이 정해진 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재정지원의 상위기관, 관련법령 및 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센터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